

대법원 2024. 4. 12 선고 2023다267294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4. 4. 12 선고 2023다267294 판결

서울고등법원 2023. 7. 21 선고 2017나2074062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9 선고 2014가합572708 판결

전문

원고(선정당사자), 피상고인

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

피고, 상고인 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클라스한결

담당변호사 황찬현, 여상훈, 유남근, 최정현, 김성진

판결선고 2024. 4. 12.

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. 7. 21. 선고 2017나2074062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,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(이하 ‘원고 등’이라 한다)이 구 임대주택법(2012. 1. 26. 법률 제1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‘구 임대주택법’이라 한다) 제21조에 따른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에 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.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임대주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신숙희, 대법관 이동원, 주 심 대법관 김상환, 대법관 권영준

별지